

I.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고
<p>제25조 (FA제도) ①~② (생략)</p> <p>③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의 결석 허용계는 위 한계의 두 배이다. (여기서 졸업하는 학기란 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를 말한다.) <u><개정 2025.10.30></u></p> <p>④ 학생의 <u>결석회수</u>가 위의 허용한계에 도달될 경우,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공고하여 해당 학생에게 경고한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과목별 결석 및 <u>지각회수</u>를 기록 보관하여 FA경고에 항시 유의하여야 한다.</p> <p><개정 2012.2.22., <u>2025.10.30</u>></p> <p>⑤~⑥ (생략)</p> <p>⑦ 졸업예정 학기에 <u>조기 취업 및 입사시험으로 인하여</u> 부득이 제③항의 결석 허용한계 초과 시, 학생이 취업확인서(지정 서식)를 <u>해당 기업(또는 기관)의 확인</u>을 받아 학사지원팀에 제출할 경우, <u>담당교수 재량에 의하여 해당 근무기간을 출석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u> <신설 2016.10.14.> <개정 2025.10.30></p> <p>⑧ (생략)</p>	<p>제25조 (FA제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의 결석 허용계는 위 한계의 두 배이다. (여기서 졸업하는 학기란 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를 말한다.) <u>단, 계절학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u> <개정 2025.10.30></p> <p>④ 학생의 <u>결석횟수</u>가 위의 허용한계에 도달될 경우,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공고하여 해당 학생에게 경고한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과목별 결석 및 <u>지각횟수</u>를 기록 보관하여 FA경고에 항시 유의하여야 한다.</p> <p><개정 2012.2.22., <u>2025.10.30</u>></p> <p>⑤~⑥ (현행과 같음)</p> <p>⑦ 졸업예정 학기에 <u>조기 취업 및 입사 전 연수 등으로 학업과 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u> 부득이 제③항의 결석 허용한계 초과 시, 학생이 취업확인서(지정 서식)를 <u>수업 담당 교수 및 해당 기업(또는 기관)의 확인</u>을 받아 학사지원팀에 제출할 경우, <u>담당 교수 재량에 의하여 해당 근무 기간을 출석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u> <u>단, 회사와 병행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및 계절학기 수업에 대해서는 취업확인서를 적용하지 않는다.</u> <신설 2016.10.14.> <개정 2025.10.30></p> <p>⑧ 본조 7항의 조기 취업은 정규직 및 계약직 사원, 채용이 연계된 인턴인 경우에 한하며, 창업, 일용직 및 단시간근로자, 직계존비속 및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해외취업시 정식 취업비자가 아닌 경우, 그 외 교무처장이 조기취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직종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10.30></p>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
부 칙	부 칙	
<p>부 칙</p> <p>1.~58. (생략)</p> <p>59. <u><신설></u></p>	<p>⑨ (조항 이동)</p> <p>부 칙</p> <p>1.~57. (현행과 같음)</p> <p>59. <u>(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u></p>	<p>부 칙 신설</p>

II. 학칙 시행세칙 개정 전문

서강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정 2005.10.10

개정 2025.10.3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서강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 공

- 제2조 (전공선택) ① 모든 학생은 반드시 모집단위 내에서 하나의 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로욜라국제대학 내 전공, 인공지능학과, 반도체공학과 및 시스템반도체공학과를 제외한 입학학년도 학칙 <별표1> 내의 전공을 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06.2.14., 2022.03.23., 2024.12.16., 2025.06.17>
- ②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현재 이수 중인 전공 학과장과 변경을 희망하는 전공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1전공의 변경이 가능하며, 본조 제6항 및 제7항의 모집단위 내 전공 변경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4.12.16.>, <개정 2025.06.17.>
- ③ 추가 전공은 입학학년도 모집단위 내에 존재하는 소속대학 및 타대학 내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연계전공의 추가 전공 신청과 학생설계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4.12.16>
- ④ 전공의 신청은 이수 둘째 학기말 소정기간에 전공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5.20>
- ⑤ 전공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및 변경,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의 특성에 따라 대학 내규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03.23>
- ⑥ 이수중인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 재적기간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이수 셋째 학기말 이후 소정기간에 지도교수와 변경을 희망하는 전공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12.11>
- ⑦ 전공 변경은 모집단위 내에서 해야 하며, 추가전공은 모집단위에 관계없이 변경할 수 있다.
- ⑧ 편입학한 학생은 편입학 당시의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6.2.14, 2013.7.11>
- ⑨ <삭제 2006.2.14>

⑩ 전공예약제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의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2.2.22>

⑪ <삭제 2007.2.6>

제3조 (추가전공) ① 전공 이외에 추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수 넷째 학기말, 편입학생은 이수 다섯째 학기말 소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 전공을 포함하여 제3전공까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지식융합미디어대학 학생이 동 대학 내 전공 중에서 추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수 둘째 학기말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12.11, 2018.12.18., 2020.06.08., 2022.03.23>

③ 이수중인 추가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수 다섯째 학기말 이후 소정기간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6.2.14>

④ <삭제 2020.06.08>

⑤ <삭제 2020.06.08>

⑥ 아트&테크놀로지전공을 추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입학정원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4.4.10.>

⑦ 글로벌융합학부는 대학 내규로 추가전공에 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제4조 (연계전공) ① 각 연계전공은 둘 이상의 전공(학과)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삭제 2015.5.22>

③ 각 연계전공의 주임교수는 관련 전공교수 중에서 전공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공별 운영위원회는 교과과정 운영 등 중요한 사항을 연구·심의한다.<개정 2006.2.14>

④ 각 전공별 관련 전공(학과)에서 해당 과목을 개설하는 영역 및 학기와 동일하게 편성 운영한다.

⑤ 연계전공을 추가 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기존 개설 연계전공 및 입학 후 신규 개설된 연계전공 모두 선택 가능하다. <신설 2024.12.16>

⑥ 전공 신청 및 변경, 포기 등은 학칙 제7장 및 학칙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2.14, 2019.4.26, 2024.12.16>

⑦ 연계전공을 추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과정 구성은 해당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요청으로 해당 연계전공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세부적인 심의가 필요할 경우 교무처장은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12.11>

⑧ <개정 2014.12.11><삭제 2024.12.16>

⑨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2.14>

⑩ <삭제 2025.08.08>

⑪ 연계전공의 학위명은 학칙 제49조에 따른다.

⑫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연계전공주임교수 및 운영위원들의 수강 지도를 받는다.

⑯ 연계전공은 전공 학생 수, 전임교원 강의비율 등을 고려하여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고, 교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속 개설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6.8.10>

제5조 (학생설계전공) ① 학생설계전공의 신청 및 변경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학생설계전공의 이수학점은 최소한 36학점 이상으로 하되, 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54학점 이상 100학점 미만(타대학교 과목은 최대 9학점)의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전공신청 시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9>

③ 교무처장은 제출된 교과과정과 관련된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협의하여 교과과정을 심의한 후 전공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④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명을 학위기에 표기한다.

⑤ <개정 2014.12.11><삭제 2024.12.16>

⑥ 인문학 진흥을 위해 ‘학생설계 융합인문학과정’을 학생설계전공의 한 트랙으로 설치하고 본 시행세칙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며, 해당 전공명을 학위기에 표기한다.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3.22>

⑦ 공통필수, 공통선택, 전공입문교과는 교과목 구성에 포함할 수 없다. <신설 2022.12.19><개정 2024.12.16>

⑧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 변경은 불가하다. 다만, 학생설계전공의 최초설계자는 교과과정 추가 또는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를 포함하여 재학한 직전 2학기 이내에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승인 하에 교과과정 변경이 가능하다. <신설 2022.12.19><개정 2025.02.27>

⑨ 최초설계자 또는 기승인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본인의 다른 전공과 학생설계전공 간 필수과목 겹침으로 인해 학생설계전공의 필수과목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승인 하에 학생설계전공 내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4.10.21.>

⑩ 8항에 따라 최초설계자가 교과과정으로 추가한 과목은 해당 학생설계전공의 기승인 이수자에게도 적용된다. <신설 2025.02.27.>

⑪ 학생설계전공의 교과목 대체 인정은 제32조의2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5.06.17.>

제6조 (특수부전공) <삭제 2006.2.14>

제6조의2 (심화전공) (심화전공) ① 대학 또는 학과(전공)별로 심화전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03.23>

② 심화전공 이수기준은 각 대학 또는 학과(전공)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11.]<2022.03.23.><개정 2024.06.28>

제6조의3 (트랙과정) ① 학부 또는 학과(전공) 교육과정 내에 트랙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01.22>

② 트랙과정은 이수 4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 학기 전공 신청 및 변경 기간

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5.01.22>

③ 트랙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트랙과정명을 학위기에 표기한다. <신설 2025.01.22>

④ 각 트랙의 이수과정 선택 및 변경, 학위기 표기명, 이수 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01.22>

제3장 휴학 · 복학 · 퇴학

제7조 (휴학) ①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2주 이상 계속하여 강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5.20>

②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징집, 중병(상급종합병원의 4주(학기 중 기간 포함) 이상의 진단서 필수), 육아(임신·출산·육아) 및 공무로 인한 가족동반 해외출국일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특별히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4.22., 2025.02.27>

③ 등록 후 학기도중에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에 관한 사항은 본교 「등록금 내규」로 정하며 등록금을 분납하고 있는 학생은 미납금을 완납해야 한다.<개정 2006.2.14, 2011.6.17>

④ 학기말 시험기간 중에는 당해학기 휴학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군 입대(지원입대 포함) 및 육아(임신·출산·육아) 휴학을 포함한 특별한 사유가 학기말 시험 전 일주일 이내에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학기말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⑤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전 재적기간을 통하여 3년(편입학 한 학생은 3 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와 육아(임신·출산·육아), 창업, ⑩항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장기 휴학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휴학기간 3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아휴학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 및 창업, ⑩항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2.14, 2013.4.22., 2014.2.20. 2016.8.10., 2025.02.27., 2025.06.17.>

⑥ 장기 휴학(군복무, 육아, 창업) 중인 학생을 제외한 휴학생이 계속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매 학기 개시전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6.2.14, 2013.4.22, 2014.2.20>

⑦ 휴학 또는 재학 중 군에 입대하게 될 경우 입영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육아휴학(임신·출산·육아) 및 창업휴학의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2.14, 2013.4.22, 2014.2.20>

⑧ 전역한 학생은 전역 후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 소정기간에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복학 또는 재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⑨ 수업개시일로부터 12주가 경과한 후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군 입대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⑩ 총장이 지정한 의사가 건강상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⑪ 성적미달로 조건부 등록대상이거나 징계처분 중에 있는 학생은 휴학할 수 없다. 다만, 해당학생의 휴학사유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징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8.17)
 - ⑫ 2회 연속 제적 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1학기 동안 휴학 조치할 수 있다.
 - ⑬ 창업휴학은 기술창업 등 창업지원단에서 인정하는 창업에 한하며,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금융, 부동산, 숙박, 음식, 서비스 업종 등은 제외한다.
- <신설 2014.12.11.> <개정 2021.07.16.> <개정 2023.12.27.><개정 2024.06.28>

제8조 (복학) ① 복학은 학기시작 전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허가된다.

- ② 전역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 소정기간에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6.2.14>
- ③ 정신질환으로 휴학하여 복학하는 학생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5.20>

제9조 (퇴학)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명기한 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적경고 대상자로서 성적사정을 거쳐 학업을 성취할 가망이 없다고 판정된 학생은 보호자 연서로 퇴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재입학 · 편입학

제10조 (재입학) ① 재입학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 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입학 전의 취득학점이 높은 자, 성적이 높은 자, 입학년도가 빠른 자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2.2.22, 2014.12.11., 2025.02.27., 2025.06.17>

- ② <개정 2006.2.14>,<삭제 2014.12.11>
- ③ 재입학은 매 학기 개시 전 소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6.2.14>
- ④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학장의 추천을 거쳐 소정의 원서와 사유서, 서약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기타 요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재입학 할 수 있다. 단, 재입학 이전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2.14, 2025.02.27>
- ⑤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첫 학기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수업료 외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2.14, 2014.12.11>
- ⑥ 재입학이 허가된 후에도 재입학원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⑦ 재입학 전의 이수학기, 취득학점 및 성적은 재입학 후 그대로 인정한다. <신설 2014.12.11>

- 제11조 (편입학) ①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되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학사편입학의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익년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취득에 정인 자가 지원할 수 있다. 매 학년 초(또는 학기 초) 3학년 전체 정원의 2% 이내 와 해당 모집단위, 정원의 4%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 ③ 일반편입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편입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 수료자,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2021.06.16.>
- ④ 본인만 외국인, 교포, 외교관자녀, 기타 재외국민 등은 특례신입학자 중 1, 2학년의 제적자 수만큼 2,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부·모·본인 외국인, 귀순 북한 동포는 수학능력이 인정될 경우 제적자 수에 관계없이 2,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전적교(본교 제외)에서 취득한 과목 중 본교 교육과정의 공통선택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성적은 C^o이상이어야 하며, 해당과목의 성적은 'S(Successful)'로 인정한다.<개정 2009.5.26., 2015.10.29., 2018.12.18., 2022.6.14., 2025.01.22>
- ⑥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취득학점인정과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기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5.26., 개정 2021.06.16.>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기준과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기 및 학점>

구 분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기준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기 및 학점
일반편입	4학기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의 1/2	4학기 이상 - 졸업학점의 1/2
학사편입	학사 학위 취득자 - 졸업학점의 1/2	4학기 이상 - 졸업학점의 1/2
2학년 편입 (외국인)	2학기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의 1/4	6학기 이상 - 졸업학점의 3/4

- ⑦ 전적교의 취득과목을 본교 전공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각 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 이수요건의 1/2까지만 학점인정한다.<신설 2022.6.14>
- ⑧ 편입학자는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전적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6.2.14>
- ⑨ 편입학자에게는 조기졸업자에 관한 학칙 제5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6.14>
- ⑩ 편입학생은 공통필수, 공통선택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 단, 2학년 편입학생은 공통선택과목은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 2022.6.14., 2025.01.22., 2025.06.17>
- ⑪ <삭제 2006.2.14>
- ⑫ <삭제 2007.2.6>
- ⑬ 학칙 시행세칙 제3조 제①항에 의하여 추가전공을 승인 받아 이수할 경우, 본교

에서 이수한 교과목만 추가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2.12.23.>, <개정 2021.12.13.>

제5장 수강신청 · 재이수

제12조 (수강신청) ① 모든 학생은 매학기 실시하는 수강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다음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선정한 후 전산망을 이용해서 입력한다.

②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별도 지정된 일자에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이하 삭제) (개정 2017.7.20)

③ 특히 3, 4학년 학생은 수강신청 시 본인의 과목 이수표를 세밀히 점검하여 교양 및 전공교육 영역의 필수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④ 교양 필수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은 수업시간표에 지정된 학년, 학기에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졸업이 늦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⑤ 모든 학생은 9~19학점으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 및 졸업예정 학생은 22학점까지 수강 이수할 수 있다. 단, 알바트로스 세미나, 성찰과 성장 및 학군사관후보생교육 과목은 수강 학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5.26, 2012.2.22, 2014.12.11, 2018.12.18, 2022.1.20, 2022.6.14>

제13조 (수강과목의 변경) ① 수강과목 확인 및 변경기간은 학기 개시 전 교무처장이 공고 한다.

② 수강신청을 한 모든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확인 변경기간에 본인의 수강신청 사항을 확인한다.

③ 수강과목의 변경은 강의시간의 변경, 폐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④ 수강과목과 분반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산망을 이용해서 입력한다.

⑤ <삭제 2014.7.14>

제14조 (수강과목의 취소) ①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직접 학사포탈시스템을 통하여 취소한다. <개정 2019.12.19>

② 학기당 수강 학점수가 9학점 미만으로 수강과목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전공주임교수), 학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6 학점선까지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5.26>

③ 매학기 수업개시일로부터 4주일 이내에 수강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제15조 (재이수)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다. 재이수의 경우 전(前) 성적의

학적부 기록은 R(Re-registered)로 대체되며 새로이 취득한 성적으로 총성적평점평균(CGPA)을 계산한다.

- ②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2.14., 2014.12.11>
- ③ 재이수 과목은 본 시행세칙 제12조 ⑤항에 따른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된다.<개정 2009.5.26., 2020.06.08>
- ④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수강신청학점의 제한을 둘 수도 있다.<개정 2006.2.14>
- ⑤ 과목번호, 과목명 및 과목내용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8학기 이상 재학생에 한하여 재이수할 과목이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재학한 직전 4학기 이내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재이수 대상과목을 개설하는 전공 학과장의 요청으로 당해 학기에 개설된 타 과목으로 재이수 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 ⑥ 이미 취득한 과목과 과목번호,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은 신규수강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 ⑦ 재이수는 재학 중 8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계절수업 중 재이수는 재학 중 8회에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06.2.14, 개정 2014.12.11, 2020.06.08>
- ⑧ <신설 2007.2.6.><삭제 2023.09.06>
- ⑨ <삭제 2020.06.08>
- ⑩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S(Successful)’ 등급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다.<2015.10.29>
- ⑪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본교 교과목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재이수 할 수 없다.<2015.10.29>

제6장 학사경고 · 제적 · 부정행위

제16조 (학사경고) ① 이수한 과목의 총성적평점평균(CGPA)이 1.75에 미달하는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고, 아래의 학사제적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에게는 제적 경고를 하며, 대상 학생의 성적표에 각각 해당하는 경고 표시를 한다.<개정 2025.02.27>

- ② <삭제 2006.2.14.>

<학사제적 대상 기준>

이수학기수	1~3학기	4~6학기	7학기 이상
제적대상 (CGPA)	1.50 미만	1.60 미만	1.75 미만

- ③ 총성적평점평균이 제적 대상이 되는 학기의 학생은 조건부 등록을 허가한다. 학교는 조건부등록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대상 학생은 지도교수나 학과장에게 면담하고 보호자 연서로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2.14, 2013.7.11, 2014.7.14>

제17조 (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학생은 제적한다.<개정 2006.2.14>

1. 총 성적평점평균이 연속하여 3회 제적대상이거나, 이수 첫 번째 학기의 성적이 0.00인 학생[제16조에서 이동<2006.2.14.>] 단, 이수 첫 번째 학기의 성적이 0.00인 학생 중 한국어교육과정 과목을 이수한 국제학생은 예외로 한다.
<2024.12.16>
2. 조건부 등록 대상이 조건부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학생[제16조에서 이동<2006.2.14.>]
3.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휴학 허가 없이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4. 휴학기간이 끝나고도 복학하지 않는 학생
5. 학칙에서 정하는 재학연한에 도달했음에도 졸업소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
6. <삭제 2016.8.10>
7. <삭제 2006.2.14.>
8. 등록금분할납부제(분납)을 이용하여 등록하였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신설 2025.06.17>

제18조 (부정행위)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부정행위와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은 학칙 제60조에 따라 징계하며,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을 해당 징계조치와 별도로 총장의 품의를 받아 취소 혹은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14., 2025.08.08>

1. 시험 중 부정직한 행위
2. 수업시간에 대리출석 또는 대리 점호에 응하거나 이를 의뢰하는 행위
3. 기타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행위

제7장 계절수업 · 특별수강 · 특별시험

제19조 (계절수업) ① 조기졸업 희망자 및 필수과목 미 이수자, 또는 기타과목 이수 희망자를 위하여 하계 방학기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실시한다.

② 수업기간은 4주 이내로 하고 학점 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7.11>

③ 한 계절 당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소정 등록기간 중에 전산망을 이용해서 입력한다. 단, 군이러닝 학점을 9학점까지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14., 2012.2.22., 2021.06.16. 2023.12.27>

④ 수강신청 학생수가 15명 미만인 과목은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수강신청 한 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과목의 취소는 개강 후 3일 이내에 직접 학사포탈시스템을 통하여 취소한다.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취업, 질병(수술, 입원, 전염성 질환)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에는 그 증빙서류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교무처장이 승인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7.11, 2017.7.20, 2020.06.08>

⑥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학기 신청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학적부에 계절학기로 별도 기재하고 다음 학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 총취득학점 및 총성적평점평균에 산입한다. 다만, 조기졸업신청자를 제외한 8학기 이상 정규 등록한 학생 중 졸업직전 계절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당해학기 졸업사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1.2.18, 2013.4.22>

- ⑦ 수업료는 학점 단위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이를 확정 공고한다. 개강 전 수강과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개강 후 취소할 경우에는 개강일부터 수업일수 1/3까지는 수업료의 2/3를, 수업일수 1/2까지는 수업료의 반액을 환불한다.<개정 2013.7.11, 2017.7.20>
- ⑧ 수강과목의 결석회수가 총 수업시간의 1/8을 초과하면 해당과목의 성적은 FA로 처리한다.
- ⑨ <삭제 2006.2.14>
- ⑩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수업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복학 후 최소한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졸업 할 수 있다.<신설 2011.2.18>
- ⑪ 계절수업의 등록과 수강은 학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1.2.18>
- ⑫ 계절학기는 유고결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수업시간의 1/8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본 학칙 시행세칙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고결석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제20조 (특별수강) ① 본교 학생이 아닌 자(외국 대학의 재학생 포함)나 본교 대학원생이 어떤 교과목의 특별수강을 원할 때에는 본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교무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특별수강은 대학에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본 대학교 재학생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간주되는 자에게 허가한다. 단, 외국 대학의 재학생은 별도 협약에 근거하여 최소 이수학기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05.03.>
- ③ 특별수강생의 수학연한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외국 대학의 재학생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제처장의 승인을 통해 수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08.08>

- ④ 정규학기 및 계절 수업의 특별수강 절차는 다음에 의한다.
 1. 특별수강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교무처장에게 특별수강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외국 대학의 재학생은 국제처장에게 특별수강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2.14, 2008.6.20, 2009.12.21., 2014.7.14., 2024.05.03>
 2. 특별수강 허가는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대학 재학생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한국어능력 테스트를 할 수 있다.<개정 2006.2.14.>
 3. 특별수강생은 당해 학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2.14, 2008.6.20>
 4. 특별수강생의 수강신청은 학기당 15학점(계절수업은 6학점) 이내로 한다.
 5. 특별수강생에 대한 수강료는 따로 정한다.
- ⑤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을 시 이를 발급한다.
- ⑥ 특별수강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교 학칙 및 제규정을 적용하며, 규정된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교 학생의 수업 및 학생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별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6.2.14>

⑦ <삭제 2023.06.14>

제21조 (특별시험) <삭제 2018.12.18.>

제21조의2 (영어 이수면제) <삭제 2018.12.18.>

제8장 학점인정 · 학점등록

제22조 (학점인정) ① 국내외 대학, 공공기관, 산업체 등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본교와 상호 학점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12.2, 2010.5.20., 2013.7.11, 2016.12.23>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학기를 본교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대학 교환학생은 본교와의 협약에 의한다.

③ <삭제 2016.12.23>

④ 학점인정은 매학기 종료 후 즉시 소정의 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전공주임) 및 학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학교주관의 국제교류프로그램, 공공기관 및 산업체실습 등 학칙 제55조의 등급과 평점기준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의 학점은 S(Successful) 또는 U(Unsuccessful)로 평가하고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⑥ 교육부에서 평가 인정한 본교부속교육기관 개설과목의 학점은 6학점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6, 2013.7.11, 2022.12.19>

⑦ <삭제 2006.6.27>

⑧ 학부 외국인 전형 한국어트랙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 전 또는 1,2학년 재학 중에 본교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과정 정규과정을 이수한 경우 총 18학점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15.5.22> <개정 2017.1.24., 2024.10.21>

⑨ 이외의 적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2 (소프트웨어교육 학점인정) ① 입학 전 본교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기초인공지능프로그래밍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18., 2021.06.16. 2022.01.20>

② 학점인정 대상은 'A0' 이상의 성적 취득자 중 이수 첫 학기 소정기간에 학점 인정을 신청한 학생으로 한다.

③ 학점인정 시 취득한 성적은 그대로 기재하되,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17.1.24]

제23조 (학점등록) ① 8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학점등록을 매학기 9학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6.14>

② <개정 2021.06.16.> <삭제 2023.06.14>

③ 학점등록은 "학사지원팀"에 학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등록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5.20>

- ④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이 한 학기 수강신청 최소학점(9학점) 이상을 이수 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가 명시된 증명서류에 의거한 장애인 복지 자문 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제1항과 제2항의 내용과 관계없이 입학 첫 학기를 제외한 학기에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의 정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9.5.26, 2022.01.20>
- ⑤ 학점등록에 따른 납입금은 따로 정한다.

제9장 지정좌석제 · FA제도 · 유고결석

제24조 (지정좌석제) ① 학생이 강의나 실험에 충실히 출석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 ② 매학기 첫 수업 시간에 담당 교수에 의하여 모든 학생들의 좌석이 지정된다.
- ③ 좌석 배치표에 의하여 출결을 점검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학기동안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간주된다.
- ④ 담당교수는 수업 시작 시 출결을 점검하며, 수업 시작 후 15분 이내의 출석은 지각으로, 15분 후의 출석은 결석으로 간주된다.<개정 2018.12.18>
- ⑤ 수업도중에 강의실 및 실험실을 떠나는 경우는 결석으로 간주된다.

제25조 (FA제도) ① 한 학기 동안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결석허용 한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적은 FA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 ② 매 과목당 결석 허용 회수는 한 학기를 통산하여 주당 수업시간수의 두 배까지이다. 즉, 한 학기에 주당 3시간 과목은 6시간, 주당 2시간 과목은 4시간까지 결석이 허용된다. 3회의 지각은 한 번의 결석으로 환산된다.
- ③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의 결석 허용한계는 위 한계의 두 배이다. (여기서 졸업하는 학기란 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를 말한다.) 단, 계절학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5.10.30>

④ 학생의 결석횟수가 위의 허용한계에 도달될 경우,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공고하여 해당 학생에게 경고한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과목별 결석 및 지각 횟수를 기록 보관하여 FA경고에 항시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2025.10.30>

⑤ 위의 결석허용 한계를 초과한 학생은 이를 공고하며, 해당과목의 성적은 과목낙제인 FA로 표시된다.<개정 2022.6.14>

⑥ 강의와 실험실습으로 구성된 과목에 있어서는 출결점검을 구분하여 처리하며 강의와 실험실습 중 어느 하나에서 FA를 받을 경우 그 과목 전체 성적이 FA가 된다.

⑦ 졸업예정 학기에 조기 취업 및 입사 전 연수 등으로 학업과 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부득이 제③항의 결석 허용한계 초과 시, 학생이 취업확인서(지정 서식)를 수업 담당 교수 및 해당 기업(또는 기관)의 확인을 받아 학사지원팀에 제출할 경우, 담당 교수 재량에 의하여 해당 근무 기간을 출석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단, 회사와 병행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및 계절학기 수업에 대해서는 취업확인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6.10.14.> <개정 2025.10.30>

- ⑥ 본조 7항의 조기 취업은 정규직 및 계약직 사원, 채용이 연계된 인턴인 경우에 한하며, 창업, 일용직 및 단시간근로자, 직계존비속 및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해외 취업시 정식 취업비자가 아닌 경우, 그 외 교무처장이 조기취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직종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10.30>
- ⑦ 제⑦항의 경우, 담당교수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할만한 수업 과제나 시험을 통하여 평가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성적은 B+ 이하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10.14>

제26조 (유고결석)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결석하게 될 경우 사고발생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 발생일 포함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1전공 소속 대학행정팀에 유고결석계를 제출하면 각 사유별 결석허용기간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개정 2007.2.6, 2022.03.23, 2025.02.27>

1.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본인 결혼시 7일(휴일 포함), 조부모, 증조부모 사망시 3일(장례일정이 3일 초과시 장례일까지/휴일 포함) <개정 2013.7.11, 2016.12.23, 2024.06.28>
2. 입원치료, 전염성 질환 등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의 경우 최대 2주 이내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개정 2013.7.11, 2016.12.23, 2025.02.27>
3. 징병검사 등 병역관계 및 예비군훈련의 경우 통지서에 명기된 일수 <개정 2016.12.23>
4. 교직과목 내 교육실습에 해당하는 학교현장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 야외실습, 기타 본교 주관 교육프로그램 참가의 경우 해당기간 <개정 2024.10.21>
5. <삭제 2016.12.23>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의 경우 해당시간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시간
8. 신문 발간을 위한 정·부편집장의 긴급작업의 경우 해당시간
9. 장학금 수여식, 국제대회 참여, 공신력 있는 기관 주관 행사의 결선 및 시상식 참여, 지도교수가 공식적으로 포함된 학술회의에 발표자로 참석, 학교 공식 홍보 활동 등 학교가 승인하는 교내·외 중요 행사의 경우 해당기간 <개정 2025.02.27>
10. 긴급한 재난 재해, 1급 법정 감염병 및 기타 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등 총장이 지정한 사유의 경우 해당 기간 <신설 2022.6.14>
11. 본인 출산시 20일, 배우자의 출산시 10일(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전후로 신청 가능) <신설 2023.05.11>
12.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 <신설 2024.06.28>

- ② 다만, 제7호 및 제8호는 학생문화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12.23, 2025.02.27>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1. 신문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2. 각 동아리의 연습 및 공연
3. 타교와의 운동 시합
4. 교통편의 연착
5. <삭제 2013.7.11>
6. 가족의 병고
7. 가사 및 개인사정

[전문개정 2006.2.14.]

- ④ 본 조 1항의 증빙서류는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들로 인정한다.
1. 사망 확인서,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혼인 신고서 등
 2. 입퇴원 확인서, 등교 불가가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3. 징병 검사 통지서, 참석 확인서 등
 4. 증빙자료가 포함된 담당 부서의 공문 등
- <신설 2025.02.27.>

제10장 국내외 교류교육

제27조 (국제교류) 본교와 외국대학간의 학생교류교육을 위하여 학점을 상호 인정하는 단기 해외유학 제도를 운영한다. 단기해외유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1., 2016.12.23>

②~⑯ <삭제 2016.12.23>

제28조 (국내대학 학점교류) ① 국내의 교류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소요학점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개정 2006.2.14, 2006.6.27, 2015.5.22>

②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등은 대학간 협약으로 정한다.

③ 학점교류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학기를 이수하고 졸업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절학기에는 학점교류를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4.12.11.> <개정 2023.06.14., 2025.06.17>

④ 학점교류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16>

⑤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백분위 환산 점수에 따라 본교의 성적으로 변환하여 인정하며, 평점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개정 2022.08.22.>

⑥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교양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학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재학기간 중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전공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11.>, <개정 2021.12.13.><개정 2023.06.14>

⑦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교직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본교 교직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11>

⑧ 국내교류로 이수한 과목과 본교 수강 과목 간 상호 재이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4.12.11.><개정 2022.08.22.>

⑨ <신설 2022.12.19.><삭제 2023.07.28>

- 제28조의2 (학기교환제) ① 대학 간 학점교류 협약에 따라 협정 대학과 학기교환제를 실시하며 세부 내용은 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3.07.28>.
② 학기교환제로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 환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학기교환제의 경우 전공 과목 인정에 관한 제28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한 학기 당 인정 가능한 전공 과목은 최대 6학점 이내로 한다.
④ 학기교환제로 수강하는 과목과 본교 수강과목 간 상호 재이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08.22.]

- 제28조의3 (군이러닝강좌 수강) ① 군복무기간 중 군이러닝강좌 수강을 통하여 학기당 3학점, 최대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② 성적은 S/U로 평가 후 교양학점으로 인정하며, 군 전역 후 복학하는 이전 계절학기에 학점인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12.15.> <개정 2023.06.14>
③ 군이러닝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기간에 군이러닝 학점취득확인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06.16.>
[본조신설 2020.06.08.] [제28조의2에서 이동<2022.08.22.>]

- 제28조4 (공유대학) ① 대학 간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유대학에 참여하는 경우, 공유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사항은 국내대학 학점교류의 제 규정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칙 시행세칙 제28조 ⑤항에도 불구하고, 공유대학에 본교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그 교과목을 본교 학생이 이수할 경우 본교 이수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③ 학칙 시행세칙 제28조 ⑦항에도 불구하고, 공유대학 내 본교 개설 교과목과 본교에서 수강신청하여 이수한 교과목 간 재이수를 허용한다.
<본조신설 2023.07.28.>
④ 학칙 시행세칙 제28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공유대학은 국내외 교류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소요학점의 2분의 1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신설 2024.10.21.>, <개정 2025.06.17>
⑤ 학칙 시행세칙 제28조 ⑤항에도 불구하고, 학과에서 인정하는 공유대학 과목에 대하여 학점의 제한 없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4.10.21.>
⑥ 학칙 시행세칙 제28조 ③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절학기 공유대학을 수강하고 졸업할 수 있다.<신설 2024.10.21.>

- 제29조 (현장실습) ① 현장실습이라 함은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산업체 및 기관 등의 현장실습기관과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현장실습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한다. <개정 2021.12.13>

- ③ 현장실습은 3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1.12.13., 2023.12.27>
 - ④ 현장실습 시간 및 기간은 전일제 1일 8시간 기준, 4주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개정 2021.12.13>
- ⑤ ‘현장실습학기제’는 현장실습기관과의 협약체결, 사전교육, 상해보험 가입, 학교의 지도·감독 등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
 - ⑥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최대 15학점 이내에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학과(전공)에서 개설한 ‘전공현장실습’ 과목은 위 인정범위 외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22.03.23>
 - ⑦ 현장실습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7.5.12]

- 제30조 (해외인턴십)
- ① 본교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기간 동안 인턴십을 이수한 학생은 15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전공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교양학점으로 한다.
 - ② 학점인정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해당학기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해외인턴십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학장을 경유, 국제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2.14, 2008.6.20, 2009.12.21>
 - ④ 졸업학기에는 해외인턴십 이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학기에도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06.2.14>
 - ⑤ 인턴십 학점은 해당 학생이 해당 기업체의 평가서 등을 첨부한 소정의 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후 소속 학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2.14>
 - ⑥ 해외인턴십의 평가는 학생의 보고서와 해당기업의 평가서를 통해 S(Successful) 또는 U(Unsuccessful)로 평가한다.

제11장 조기졸업 · 졸업논문 · 졸업연기

- 제31조 (조기졸업)
- ① 조기졸업 제도는 학업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에게 수업연한을 1 또는 2학기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5학기 또는 6학기 말까지 108학점(계절수업 취득학점 포함, 단,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경영대학은 10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성적평점평균 및 전공과목 성적이 3.75 이상인 학생으로 조기에 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학기 초 소정기간에 보호자 연서로 조기졸업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개정 09.5.26., 2022.03.23., 2022.6.14>
 - ③ 조기졸업의 조건은 130학점(단,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경영대학은 12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공 성적 및 총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단, 학부·대학원연계과

정 학생은 3.30이상)이어야 하며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2009.5.26, 2022.03.23, 2022.6.14>

- ④ 조기졸업자는 학적부에 “조기졸업”이라 기재한다.

제32조 (졸업논문 및 특수연구) ① 졸업논문(또는 특수연구보고서, 졸업종합시험 : 이하 “논문”이라 함)은 학생이 선택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전공의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06.2.14>

- ② 논문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3학점을 부여하되, 전공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③ 논문 이수 자격은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한다.<개정 2009.5.26>

- ④ 논문 지도교수는 해당 전공전임교수 중에서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선정하여 학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06.2.14>

- ⑤ 논문 지도교수 1인이 담당하는 학생수는 1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⑥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 ⑦ 논문 제출 시기는 전기 졸업예정자는 11월 말까지, 후기 졸업예정자는 5월 말일 까지 지정된 규격 및 양식에 따라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2.14>

- ⑧ 논문 심사위원회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선정하여 학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06.2.14>

- ⑨ 심사위원회는 논문 지도교수 및 그밖의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대학전공분야(소속학과) 교수는 누구나 심사를 참관할 수 있다. 논문심사는 전기 졸업예정자는 12월 15일까지, 후기 졸업예정자는 6월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22.03.23>

- ⑩ 논문(각 학과의 구과목번호199)의 성적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⑪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논문제목 및 판정내용을 명시한 논문심사 결과를 소정의 학기말 성적제출 마감일까지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2.14>

- ⑫ 합격된 논문 제목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 ⑬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이 어떤 사유로 해당학기에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논문합격 자격을 1년간(등록기간) 연장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의 경우에는 제대 후 1년까지로 한다.

제32조의2 (교과목 이수의무) ① 모든 학생은 「학칙」 제36조, 제41조 및 「학칙 시행세칙」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충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를 포함하여 재학한 직전 2학기 이내에 교양 및 전공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학생에 한하여, 교양 및 전공 필수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학(원)장의 요청으로 교과목을 대체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06.16.] <개정 2022.01.20.>

- ② 본조 1항에서 재학한 직전 2학기 이내를 계산할 때, 교환학기, 국내·외 현장실습 등 본교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전 학기를 계산한다.<신설

2024.12.16>

③ 각 대학 및 전공에서 필요한 경우 전공입문 및 전공과목에 대한 대체요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학위원회의 결의를 통과한 요건에 대해서만 인정 한다.<신설 2024.12.16>

제32조의3 (중복학점 인정) ① 학부 졸업요건 이수 시 한 개의 수강 과목은 한 개의 졸업요건에만 충족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과목의 중복학점 인정을 허용한다.

1. 교양 공통교과 과목이 1전공 또는 다전공으로 이수하고 있는 전공의 전공입문(예비)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제한 없이 중복을 인정한다.
2. 한 전공의 전공입문(예비)과목이 다전공하고 있는 다른 전공의 전공입문(예비)이거나 전공과목인 경우 제한 없이 중복을 인정한다.
3. 자유전공학부의 기반과목이 교양 공통교과, 전공입문 및 전공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제한 없이 중복을 인정한다.
4. 연계전공 또는 학생설계전공을 다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른 전공과 전공과목이 중복되었을 때 6학점 이내에서 중복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5.06.17.>
5. 각 전공에서 과목간 중복인정에 대해 교학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인 경우 별도로 중복인정을 허용한다.

[본조신설 2024.12.16]

제33조 (졸업연기) ① 언어 자격증 요건 등을 포함한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된 해당 학기 재학생을 졸업예정자로 처리하며,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기 졸업 또는 소정의 기간에 졸업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휴학 중에는 졸업할 수 없다.<신설 2024.12.16>

- ②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이 졸업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규학기를 등록하여 1학점 이상 수강하거나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자는 졸업연기를 신청할 할 수 없다.<개정 2018.12.18., 2024.12.16>
-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최대 4학기까지 가능하며, 재학연한에서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총장이 인정한 장애학생은 학칙 제 4조에서 정한 재학연한에서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까지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가능하다.

[본조 신설 2012.2.22]<개정 2018.11.12, 2018.12.18, 2024.12.16>

제12장 교육과정

제34조 (Honors Program) ①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학과(전공)별로 Honors Program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03.23>

- ② Honors Program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6.3.22.]

제34조의2 (나노디그리) ① 대학 내 전공 간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심화과정 운영을 위해 나노디그리 인증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나노디그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08.08]

제13장 원격수업

제35조 (재난 상황에서의 원격수업)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대면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경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업 대체 인정 지침에 근거하여 교무처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0.12.15.]

제36조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원격수업) ① 본교의 원격교육 체제 및 운영 등 주요 사항을 결정·관리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원격수업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12.15.]

제37조 (원격수업 보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격수업으로 보강할 수 있다.

1. 수업 내용상 단계별 진행이 필요하여 별도의 시간을 정해 보강하기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2. 보강 일정상 수강생의 수업 참여가 곤란하여 출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3. 교원이 공무출장, 학회참석 등의 사유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원격수업의 보강은 수업 대체 인정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20.12.15.]

부 칙

1.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학칙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학사내규는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1. 이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의 학사내규 21에 의해 국내외 교류교육중인 학생은 종전의 규정(학사내규)을 적용받는다.

2. 편입생의 추가전공과 관련 변경된 조항은 2006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2.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1. 이 세칙 중 제16조 제1항의 학사제적 기준은 1997학년도 신입생 및 1998학년도 편입생(2학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8년 이전에 편입학한 학생은 이전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2. 이 세칙 중 제15조 제2항 및 제7항은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3.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세칙 중 제27조 및 제28조의 편입생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2004학년도 1학기 이수학점부터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8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8.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중 제3조 2항, 제11조 6항, 제12조 5항, 제14조 2 항, 제15조 3항, 제23조 4항, 제27조 11항, 제31조 2항, 3항은 2010학년도 신입생(2010학번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9.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중 제27조 1항은 2010학년도 신입생(2010학번 편입 생)부터 적용한다.
 10.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중 제27조 14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6학번부터 적용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4.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2조 제5항의 최소수강신청학점은 2009학번까지의 8학기생에게도 적용한다
 15.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1조는 2013학년도(2013학년도 편입학 포함)부터 적용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2.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 ⌚ 개정 세칙 중 제4조 ⑦항 및 제5조 ⑤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 개정 세칙 중 제15조 ⑦항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5조 제⑦항, 제⑧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

다.

29.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2조, 제26조, 제27조)은 201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2조제⑧항, 제22조의2)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9조)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2조, 제19조)은 201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3조)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4.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 세칙 중 제3조 ①항 및 제24조 ④항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35.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4조 제⑤항)은 201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6.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4조 제①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 세칙 중 제19조 ⑤항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적용하며, 제28조2는 2021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38.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5조 5항, 제28조2 2항, 제35조, 제36조, 제37조)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9. (시행일) 이 개정 세칙(2021.06.16.)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9조 ③항과 제28조의2 ③항은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0.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7조 제⑬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1조 제⑫항, 제28조 제⑤항, 제29조 제②,③,④항)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2.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2조 제⑤항, 제22조의2 제①항, 제23조의 ④항, 제32조의2)은 2022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3.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 ①,③항, 제3조 ①항, 제6조의2 ①,②항, 제26조 ①항, 제29조 ⑥항, 제31조 ②,③항, 제32조 ⑨항, 제34조 ①항)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4.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1조 제⑤,⑦,⑨,⑩항, 제12조 제⑤항, 제25조 제⑤항, 제26조 제①항 제10호, 제31조 제②,③항)은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⑦ 개정 세칙 제11조 제⑨항은 2021학년도 후기(2022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⑮ 개정 세칙 중 제12조 제⑤항, 제31조 제②,③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⑤항은 2022학년도 1학기(봄학기)에 한해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45.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2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 세칙 중 제28조 ④항, ⑦항, 제28조의2는 2022학년도 하계학기 국내교류 및 학기교환제 수강학생부터 적용한다.
46.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세칙 중 제5조 ②항, ⑧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47.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6조 ①항)은 2023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8.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49.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50.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3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51.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4 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세칙 중 제3조 ⑦항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2.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4 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53.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4.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세칙 중 제16조 <학사제적 대상 기준>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55.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6조의3, 제17조의 5호)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⑤항, ⑩항의 개정사항은 2025년 3월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56.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57.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세칙 중 제11조 ⑩항은 2026년 3월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58.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5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59.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